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7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이성권・우재준・강승규

곽규택 · 정연욱 · 최은석

배준영 · 김종양 · 신성범

주진우 • 백종헌 • 송언석

유상범 • 한지아 • 조은희

유용원 · 김상욱 · 서지영

박대출 · 조승환 · 김선교

성일종 · 김정재 · 김 건

고동진 · 강선영 · 김희정

이만희 • 김미애 • 김대식

박성훈 • 김도읍 • 박덕흠

박수영 · 서천호 · 강대식

윤재옥 의원(37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및 대외적 공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 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본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이하 "외국대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공개, 활동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대내외 안보와 대외관계를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외국본인이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조합, 협회, 법인, 기업, 기구, 기타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 등을 말하며, 외국대리인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대리인, 대표자, 피고용인, 외국본인으로부터 명령, 요구, 지시나 통제를 받아 행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외국본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감독, 지휘, 통제, 재정 또는 자금지원을받아 정치적 활동, 정책 또는 정치 자문, 홍보, 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함(안 제2조).
- 다. 외국대리인이 활동할 수 없는 범위와 금지행위 등을 별도로 규정 함(안 제5조).
- 라. 외국대리인은 등록서류와 증빙서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

록 하여 등록 후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마. 외국본인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등록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외국본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던 효력은 즉시 상실됨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바.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의 관리, 외국법자문사, 종교나 예술 또는 과학적 연구 등의 활동에만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로 한 자 등은 외국대리인 등록을 면제함(안 제9조).
- 사.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에 관하여 고시하고, 희망하는 이에게 등록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또는 국내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에게 조사 및 지원, 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아. 법무부장관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등록 서류 및 증빙서류가 허위, 누락, 변조된 경우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본인의 대리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대 리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8조, 제19조).

- 자. 외국대리인은 회계장부, 활동기록, 접촉명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자료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대리인으로서 등록한활동 기간이 종료된 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외국대리인 또는 관계가 있는 제3자는 활동 자료를 은폐, 폐기, 말소,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안 제16조).
- 차. 외국대리인은 대상자에게 외국대리인 신분을 밝히고, 인쇄물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사본 등을 법무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 카. 외국대리인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 하. 이 법 시행 전부터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벌칙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3조).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본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공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대내외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본인"이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조합, 협회, 법인, 기업, 기 구, 기타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 등을 말한다.
- 2. "외국본인의 대리인"(이하 "외국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대리인, 대표자, 피고용인, 외국본인으로부터 명령, 요구, 지시나 통제를 받아 행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본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감독, 지휘, 통제, 재정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정치적 활동, 정책 또는 정치 자문, 홍보, 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외국본인과의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기로 합의 또는 승낙하거나 외국대리인을 자칭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도 포함한다)

- 3. "외국정부"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는 자나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상기 단체나 기관의 하위 조직 및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권적 권한 또는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위임받은 단체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대한민국의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 통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 4. "외국정당"이란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익이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정책을 추진하거나 해당 국가 정부의 정 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 지하는 행위 등을 목표로 삼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 한 행위에 전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5. "등록"이란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본인의 명칭, 대리인의 활동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서류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6. "공개"란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등록서류나 회계 장부 또는 활동 자료 사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는 법무부장

관이 국민에게 열람을 허용하거나 고시하며,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외국대리인 등록 및 공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외국대리인 등록 및 공개 관련 시책의 수립하고 추진할 때,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외국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외국대리인의 등록

- 제5조(외국대리인의 활동 범위) 외국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유출, 누설하는 행위를 포함한 「군사기 밀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밀을 다루는 분야와 관련한 모든 행위
 - 2. 산업기술의 탐지, 수집, 유출, 누설하는 행위를 포함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을

다루는 분야와 관련한 모든 행위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 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6조(외국대리인의 등록) ①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입한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1. 외국본인의 명칭(개인의 경우 성명), 소재지 등
 - 2. 외국대리인의 명칭(개인의 경우 성명), 국적, 소재지, 기존 본연의 활동 내용, 외국대리인으로서 경력 등
 - 3. 외국대리인으로서 계획하는 활동 내용 및 활동 기간
 - 4. 외국본인으로부터 수령·취득하였거나 이를 약속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나 규모 및 현금, 현물 등 경제적 이익의 형태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
 - ②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외국대리인으로 등록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 또는 취득하였 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 통장사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자 료
 - 2. 외국본인과의 외국대리인 계약서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의 계약 확인서

- 3.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의 각 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한 확인서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제7조(외국본인의 변경) ① 외국본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대리인의 기존 등록은 외국본인의 변경 시점에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외국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외국본인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외국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제6조의 각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변경사항 신고) 외국대리인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서류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등록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등록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대리인의 등록을 면 제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 외교부가 적법하게 인정하여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 관 및 이에 준하는 자
 - 2.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의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자
 - 3. 종교, 예술, 학술, 학문 또는 과학적 연구 등의 활동에만 종사하 거나 또는 종사하기로 한 자

- 4.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외국법자문사
- 5. 법무부장관이 국익을 고려하여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장 외국대리인의 공개 및 등록 취소

- 제10조(고시 및 열람)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된 외국대리인과 관련하여 외국대리인의 명칭(개인인 경우 성명), 외국본인의 명칭(개인인 경우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된 외국대리인의 등록서류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희망하는 이에게 열람 시간, 횟수, 열람 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이 밖의 고시 및 열람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관계기관 정보제공)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이 제출한 등록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사본 또는 그 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회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외국대리인 신분 공개) ① 외국대리인은 신분, 활동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활동의 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대리인이 대상자에게 공개하는 방식,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조사 및 수사요청) ① 외국대리인이 이 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사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외국대리인이 이 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 청장은 외국대리인이 이 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을 인지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의 조사 및 수사요청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4조(등록취소 및 등록효력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외국본인의 대리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제5조를 위반한 경우
 - 2. 제6조에 따른 등록서류 및 증빙서류에 허위, 누락, 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본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대리인 활동을 한 경우
- 4.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 및 증빙서류에 허위, 누락, 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제8조의 변경신고 내용에 허위, 누락, 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6. 외국대리인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이 법 또는 다른 국 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7. 이 밖에 국익 훼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대리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과 절차에 의거하여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취소 또는 등록효력 정지가 확정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외국대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외국대리인 등록 취소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외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외국대리인 등록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5조(등록취소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외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대리인의 활동자료 보존과 제출

- 제16조(활동자료 보존) ① 외국대리인은 활동에 대한 회계장부, 활동 기록, 접촉명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외국대리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외국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활동 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외국대리인 또는 외국대리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는 제1항에 따른 비치 및 보존해야 할 자료를 은폐, 폐기, 말소, 위조, 변조, 훼손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교사 혹은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④ 그 밖에 외국대리인의 활동자료의 비치 또는 보존을 위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인쇄물등 제출의무) ① 외국대리인은 외국본인을 위하여 인쇄

- 물, 전자우편, 저장매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이하 이 조에서 "인쇄물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인쇄물등의 내용 전부를 포함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쇄물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외국본인의 대리인 심의위원회

- 제18조(심의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본인의 대리인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등록 취소 또는 등록효력의 정지 등을 심의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 심의절차 등 심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2.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
 - 3. 민간위원(안보, 대외관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 2. 제1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어 도 불구하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외국본인의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외국 본인의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 등록된 외국본인을 위하 여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 2. 외국대리인으로서 제16조에 따라 활동자료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 거나 고의로 은폐, 폐기, 말소, 위조, 변조, 훼손하거나 또는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
 - ③ 제13조에 따른 조사나 수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외국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상자에게 신분을 공 개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쇄 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부터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외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